

PL법 시행, 업체·제과점 인식 전환 요구

7월부터 '제품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손해 배상'

〈취재 / 임희정 lim@mbakery.co.kr〉

제조업체가 올해 7월 이후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이하 PL법)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위생시설을 강화시키는 식품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소송에 대비해 손해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제품의 출시 시기를 늦추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PL(product liability)법은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최초의 물건부터 적용된다. 제조물에는 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모든 제품(자동차, 승강기, 전자제품, 가스석유기기, 생활용품, 식품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베이커리 업계도 PL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인명 사고시 제조업체에 책임 부가돼

제조물 배상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피해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제조업체가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

하면 제조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즉 제품의 결함에 대한 유무도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아닌 제품을 만든 판매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법안의 특징이다. PL법이 시행되면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친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품에 법에서 규정한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 여부에 따라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의 중요한 관건인 결함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함이란 제조·설계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나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물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 법에 따르면 결함은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표 참조>.

첫째,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체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편리대로 물건을 제조·가공해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체가 충분히 안전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아가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오븐, 냉장고, 쇼케이스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감전된 경

〈표〉 제조물건의 결함에 의한 예상되는 PL 사고 사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경고·지시 표시를 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핸들이 꺾여 큰 부상을 입은 경우 • 의자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다친 경우 • 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들어있는 금속이나 뼈에 입을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다 점점 귀가 난청이 되는 경우 •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음식이 부패된 경우 •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병이 생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전화를 3년간 사용한 결과 뇌종양이 생긴 경우 • 맥주를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콜중독증이 된 경우 • 다 쓴 라이터를 차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

※ 자료 출처: 한국PL센터 「제조물 책임 대책 메뉴얼」, 2001년 6월

우도 이에 속한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사용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했으면 발생하는 피해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가령 라이터에 '터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할 것'이라는 문구가 누락된 상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친다면 제조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의사항 표시가 안된 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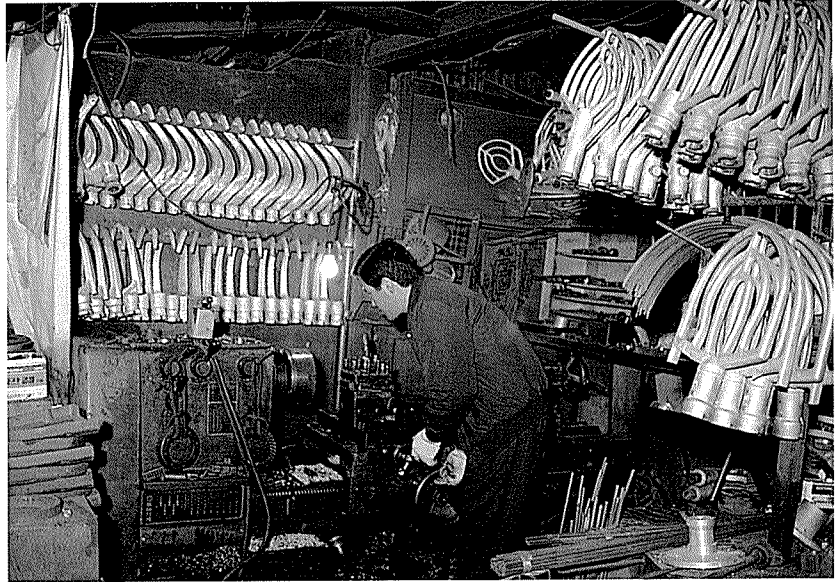
PL법이 시행되면 크고 작은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는 PL법 적용을 받은 업체가 막대한 손해배상액 때문에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다우 코닝사 등이 제조한 가습성형용 실리콘 주머니가 파열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 소송을 건 여성은 1만 2,000여명에 달하며 실리콘 제조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 및 제조중지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 전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 시행 전에 제조업체에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소송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업체 손해배상 피소 증가 예상돼 대책 시급

제과소도구 업체, 제과기계 업체, 자영제과점 등 베이커리 관련 업체도 PL법 시행에 대비해 제품의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



부분 업체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PL법이 시행되면 베이커리 및 관련 업계에서는 '식품 위생', '기계의 안정성', '제품 설명 및 경고 문구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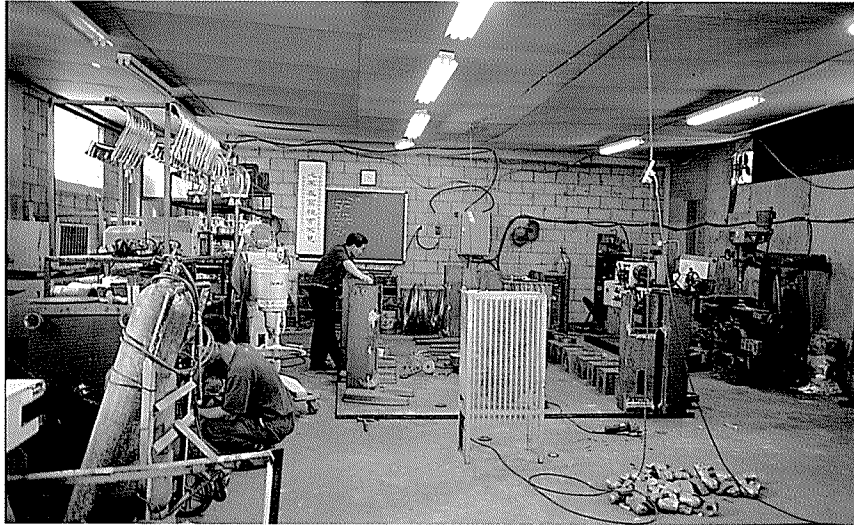
베이커리 분야의 경우 재해 발생률이 높은 제과 기계업체가 잦은 소송에 연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제과 기술자가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나 안전장치 탑재가 안된 믹서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믹서기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 결과 제조 업체가 믹서기 설계 도면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소송 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믹서기에 손가락 절단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더라도 믹서기 사용 경고 표시를 누락했다면 안전 장치 부주의로 간주된다.

손해배상은 소송 사건에 따라 보상 한도액의 정도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에 한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에어백이 갑자기 튀어나와 손가락이 골절돼 PL법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백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결과 우리 돈으로 약 21억원 이상의 보상 한도액이 결정됐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경우도 적지 않은 보상액 지급 판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의 경우에도 내부 부족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제조업체에 책임이 전가된다. 때문에 제과기계 업체가 제품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제조물 책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제조업체는 안전한 제





의 손해배상 소송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면 물건을 제조한 믹서기 및 오븐 제조업체가 생산 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인 기계업체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기계업체에서는 PL법 추진을 계기로 박리다매를 위해 기계 내용물을 값싼 부품으로 교체해 설계하거나 생산업체 표시를 누락하는 일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계업체의 책임이 무거워지

기 때문에 생산제품에 대한 원가비용을 감안한 적정 가격에 판매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계업체에 이외에 자영제과점 업주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PL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자영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사람이 배탈이 났을 경우, 빵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인체에 해로운 균이 검출된다면 업주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점포에서 상하기 쉬운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식품 안전 사고를 대비해 '주의 및 경고 사항' 표시를 하는 것도 대응 방안 중 하나이다.

결국, 기계업체는 '기계 제품의 안전장치 마련', '설계 도면에 따른 기계 생산 및 부품 사용', '안전 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시' 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자영 제과점의 경우 '제품의 신선함 유지', '식품 위생' 등에 만전을 기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제조업체 등은 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로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서도 PL전담팀을 신설해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증가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의 업종별 단체에서도 각 분야의 PL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PL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제조물 책임에 따른 '분쟁해결기구'의 존립이 절실한 가운데 이러한 PL관련 센터의 설립 움직임이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PL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업 홍보가 업종별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기술자 등에게는 홍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기업이나 점포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과 기계, 제과 재료, 자영제과점 등도 PL법에 적용되는 업체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생산 및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안전 사고를 대비한 자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예**

또한, 유통판매 전문업체인 A사가 제조업체인 B사의 오븐, 믹서, 발효기 등을 직구매하거나 OEM방식으로 물건을 주문해 판매할 때에도 문제 발생에 대한 1차 책임은 B사에게 있다. B사가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어도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결함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